

## <3차 간담회>

일시 : 3월 19일(금) 오후5시

장소 :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회의실

참석 : 이수나로, 다산인권센터, 공투본 그 외 참석자 7명

### 1. 선거관련 대응

#### -후보자 간담회(공개토론회) + 정책 제안

: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되고 선거운동이 진행될 즈음,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에게 간담회(또는 공개 토론회)를 제안

: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친화적 정책들을 제안

#### -기호0번 청소년후보 운동

: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의 계획. 기획안<첨부1> 참고해주세요.

#### -미래유권자선언운동

-지지선언 등등

-기타 아이디어를 보태주세요.

### 2. 학생인권조례 홍보 운동

@홍보할 때 필요한 것들 목록

#### -서명운동(서명지)

:아래 <첨부2> 확인

:발표는 어느 시점에서 하면 좋을지?

#### -유인물 / 판넬

:캠페인 등에서 사람들에게 뿌리고 알리기

:어떤 내용, 어떤 형식으로 만들지? 디자인은 어떻게?

#### -등하교길 캠페인

:이수나로 서울, 수원지부 계획공유

:등하교길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

:중고등학교가 붙어있는 학교 위주로 진행하고, 전단지(유인물)/서명용지 등을 챙긴다. / 같이 캠페인 을 펼 사람이 필요해요. / 중학교는 하교시간에 주로, 고등학교는 등교시간에 주로.

### 3. 기타

다음 회의 4월 2일(금) 오후5시 30분 민주노총경기본부

## <3차 간담회\_회의결과>

### 1. 학생인권조례 전국화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대응 활동의 구분 필요

-현재로써는 학생인권조례 전국화라는 과제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대응이라는 두가지의 과제가 함께 풀어야할 숙제라는 것은 분명히 동의되고 있으나 현실에서 적용할 때 효과적인 역량 배분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사실.

-결국 경기도의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을 싣고, 나머지 단체들이 전국화에 힘을 보태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듯 하나 그러기에 경기도단체들의 조건 등이 이를 모두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임.

-일단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전체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함.

### ※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지지활동

□교사, 학부모, 학생 지지선언 필요 : 시기는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위원회로 넘어가는 시기에 집중시킬 필요 있음. (4월 12일 경)

□같은 시기에 대규모 학생인권문화제를 개최해서 여론전을 펼칠 필요

□대중선전전 진행 : 유인물(들작성), 판넬(아수나로작성), 서명(각 단위별 500부 소화)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 진행

□기고 등 언론사업 : 기획안을 다산에서 작성, 다음회의에서 논의하고 4월 12일경에 맞춘 기고활동 펼치기로

### 2. (가칭)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

- 현재의 책임단위가 불분명한 간담회로는 힘받기 힘든 구조임. 이를 극복하고 힘을 결집하기 위해 (가)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로 다음번 부터 진행하기로 함.

- 기획안은 다산에서 작성해서 회람키로 하고,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.

### 3. 그 외 학생인권조례 전국화를 위한 방안은 공현의 지난번 메일을 첨부함.

## <학생인권조례 전국화 방안을 위한 활동 계획 정리>

### 1.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

- ▲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의 의지로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론화시키는 중심 지역이 되고 있음.
- ▲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제정되는 과정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참고할 만한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음.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나 또한 다른 지역에서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- ▲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 : 교육위원회/도의회와 교육감 사이의 일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일로 만들기 위한 활동 방법 필요. (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서명운동을 해서 모을 수 있도록 홍보, 학생들이 참여하는 집회문화제 등 개최)
- ▲ 경기도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(무상급식만큼은 못하겠지만...) 학생인권조례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설득.

### 2. 각 지역에서의 활동 만들기

- ▲ 전국적으로,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/사람들이 있어야 함.
- ▲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홍보하는 활동,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전반에 관해 지역에서 토론회 등의 행사를 준비하는 활동, 좀 더 본격적으로는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, 집회 등을 준비하고 실천.
- ▲ 각 지역 단체들 사이의, 그리고 지역 사이의 소통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. 메일링리스트, 공동 웹페이지, 전화 연락망 등.

### 3. 지방선거 국면 활용

- ▲ 전국적으로 지방선거 후보들(특히 교육감 후보 등)이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삼는다면 학생인권조례를 한국 사회에서 확실하게 공론화시킬 수 있음.
- ▲ 각 지역별로 학생들의 서명을 모아서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하고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.
- ▲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단체, 인권단체들 등을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각 교육감 후보들, 지자체 의원 후보들과 접촉하여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하도록 요구. 모든 지역의 이른바 '민주진보·좋은' 교육감 후보들이 무상급식에 하듯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선언을 공동으로 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음. (전국적으로 교육감 후보들과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을 파악하고 연락하는 일, 정당에 제안하는 일이 필요함.)

※ 이후 제대로 된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게 하기 위한 개입과 활동 필요.

▲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의 단체에서 ‘청소년 후보 출마’ 형태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을 기획 중인데 그 안에 학생인권보장,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포함하여 공론화에 기여.